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10. 13.(수)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당 자	• 과장 구도형, 서기관 김신지, 사무관 김지현, 주무관 김민지 • ☎ (044) 200-5240, 6181, 6182, 6184
보 도 일 시		2021년 10월 1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3.(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 「극지활동 진흥법」 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효 / 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 '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자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

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8조~9조, 제11조)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법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 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 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참고 1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주요내용

- (목적) 극지활동을 육성·지원하여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제고에 이바지
- (국가의 책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조약을 지키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
- (계획 수립) 극지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극지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실태조사 실시
- (극지활동 진흥)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경제활동 진흥, 기반 시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극지활동 활성화 추진
 - (연구개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 국제공동연구·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 (인력양성)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극지연구 및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경제활동 진흥)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
 - (인프라) 극지 과학기지, 쇄빙연구선, 항공기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
 - (정보시스템 구축)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환경보호·안전관리) 극지환경을 보호하고, 극지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마련
- (교육·홍보) 극지 및 극지활동에 관한 가치·중요성 및 지식·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참고 2

극지 관련 사진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아라온호